

제 1801 호  
1994. 2.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중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 시 보

## 차 례

● 고 시

제 1994-22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변경인가 ..... 2

제 1994-24 호 사료성분등록 ..... 4

제 1994-26 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 ..... 5

● 공 고

제 1994-26 호 제2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공고 ..... 6

제 1994-27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 7

제 1994-28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공고 ..... 7

제 1994-29 호 시의회부의안건공고 ..... 7

구 분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4-22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  
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49호(79. 8. 2)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6호(81. 9. 30), 같은 고시 제38호(83. 1. 21), 같은 고시 제690호(83. 12. 22), 같은 고시 제596호(84. 10. 12), 같은 고시 제762호(86. 10. 17), 같은 고시 제93호(90. 3. 31), 같은 고시 제138호(90. 5. 16), 같은 고시 제415호(90. 12. 20), 같은 고시 제39호(93. 2. 18)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시행) 변경인가(허가)된 서울고속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 담당관실과 서초구 지역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서울고속터미널 건물용도 층별 세부조정내역

1. 부속상가 1층 용도 조정

(단위: m<sup>2</sup>)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계		3,331.2	3,331.2		
공용시설	대합실, 복도홀	818.6	1,190.6	+ 372	본건물 3층에서
	기타	518.7	518.7		
	소계	1,337.3	1,709.3	+ 372	

- 가. 사업시행지: 변경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
    - 명칭: 서울고속터미널
  - 다.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대지면적 및 건물규모).
    - 건물용도 일부조정
      - 층별 세부조정내역: 별첨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이민복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연월일: 1994. 1. 13
    - 준공예정일: 1995. 1. 13
  -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없음.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변경 없음.
  - 아.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자. 관련도서: 생략
- 첨부: 층별 세부조정내역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494.1	494.1		
판 매 시 설	점포 등	947.8	947.8		
관람집회시설	TV경마장	552	0	- 552	본건물 3층으로
업 무, 근 름 공 용 시 설	배차, 현장사무실	0	180	+ 180	본건물 3층에서 (승차장)
2. 부속상가 2층 용도 조정					
(단위 : m <sup>2</sup> )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계		3,174.13	3,174.13		
공 용 시 설	대합실, 복도홀, 기타	1,314.13	1,314.13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1,236	1,536	+ 300	본건물 3층에서
위 탁 시 설	담구장	324	324		
관람집회시설	TV경마장	300	0	- 300	본건물 3층으로
3. 본건물 1층 용도 조정					
(단위 : m <sup>2</sup> )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계		10,004.22	10,004.22		
공 용 시 설	대합실, 복도홀 등	8,804.72	8,804.72		
판 매 시 설	점 포	411.4	0	- 411.4	본건물 3층(65.3) 및 4층(346.1)으로
근린생활시설	식 당	394.35	805.75	+ 411.4	본건물 3층(65.3) 및 4층(346.1)에서
	약국 등	393.75	393.75		
	소 계	788.1	1,199.5	+ 411.4	
4. 본건물 3층 용도 조정					
(단위 : m <sup>2</sup> )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계		10,863.4	10,863.4		
공 용 시 설	대합실, 복도홀	3,254	6,021.1	+2,767.1	승차장 자체 변경
	승차장	5,714.06	2,394.96	-3,319.1	대합실, 복도, 홀 및 관람집회시설 자체 변경
	기 타	1,309.54	1,309.54		
	소 계	10,277.6	9,725.6	- 552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판 매 시 설	점 포	203.35	268.65	+ 65.3	본건물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	식 당	363.7	17.5	- 346.55	부속상가 2층 및 본건물 1층으로
	약 국	18.75	0	- 18.75	"
	소 계	382.45	17.15	- 365.3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0	852	+ 852	부속상가 1층 및 2층에서

5. 본건물 4층 용도 조정

(단위: m<sup>2</sup>)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계		5,430.7	5,430.7		
공 용 시 설	대합실, 복도홀 등	3,031.52	3,031.52		
판 매 시 설	점 포	1,673.03	2,019.13	+ 346.1	본건물 1층에서
근린생활시설	식 당	696.9	350.8	- 346.1	본건물 1층으로
	약국 등	29.25	29.25		
	소 계	726.15	380.05	- 346.1	

6. 본건물 5층 용도 조정

(단위: m<sup>2</sup>)

시설명	세부용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계		9,673.06	9,673.06		
공 용 시 설	대합실, 복도홀 등	3,746.33	3,746.33		
판 매 시 설	점 포	311.88	311.88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556.56	556.56		
위 락 시 설	노래연습장	100.24	100.24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1,256.17	1,782.67	+ 526.5	체육관→공연장
	불명장	3,175.38	3,175.38		
운 동 시 설	체육관	526.5	0	- 526.5	
	소 계	3,701.88	3,175.38	- 526.5	

●서울특별시고시제 1994-24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배합사료의 성분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주)럭키금성상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자: 천진환

등록사료(1종) : 화란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461	수입배합사료	갓난돼지사료(하이프로믹스)	체중5kg 미만	19.0% 이상	8.0% 이상	0.7% 이상	0.6% 이상	2.8% 이하	8.5% 이하

2. 등록업체명 : 우경트레이딩 | 29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0- | 대표자 : 최 병 식

등록사료(3종) : 일본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462	수입배합사료	육성개1호사료(비타원믹스)	생후 2개월부터	25.0% 이상	8.0% 이상	1.0% 이상	0.8% 이상	4.0% 이하	8.0% 이하
서울-463	수입배합사료	육성개2호사료(비타원포스폴록)	소형견용(체중 6kg이하)	27.0% 이상	8.0% 이상	1.0% 이상	0.8% 이상	3.0% 이하	8.0% 이하
서울-464	수입배합사료	육성개3호사료(비타원그레이비)	생후2개월부터	26.0% 이상	8.5% 이상	1.0% 이상	0.8% 이상	3.5% 이하	8.0% 이하

3. 등록업체명 : 정보 S.B상사 |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46- | 대표자 : 김 상 덕

등록사료(2종) : 미국·프랑스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465	수입배합사료	육성개사료(에네르바이트)	고칼로리식	1.5% 이상	21.38% 이상	0.009% 이상	0.042% 이상	2.34% 이하	0.52% 이하
서울-466	수입배합사료	어린개사료(바리오케나나매트)	보조식	30.0% 이상	26.0% 이상	0.7% 이상	0.6% 이상	0.5% 이하	7.0% 이하

●서울특별시고시제 1994-26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  
 제한일부변경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1993  
 년 9월 15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80

호) 서울특별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  
 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  
 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제한업종	현행	변경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시간 : 24:00~04:00 -단, 야간개장시장 (남대문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청과시장)내 업소는 제한치 않음	○영업제한시간 : 24:00~04: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야간개장시장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청과시장)내 업소는 제한치 않음
단란주점	○영업제한시간 : 24:00~17:00 -단, 관광호텔내 (특 1,2급) 부대시설 (카테일바)은 02:00~17:00까지 제한	○영업제한시간 : 24:00~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
유흥주점	○영업제한시간 : 24:00~17:00	○영업제한시간 : 24:00~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00~17:00까지 제한
휴게음식점	○영업제한시간 : 24:00~04:00 -단, 역사내업소,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시설내 업소는 제한치 않음	○현행과 같음

가.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내 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업소

나. 야간개장시장내 업소 : 야간개장시장 내에 있는 업소로서 시장이 개장되는 시간에만 영업을 허용되는 업소

다. 역사내업소 : 항공기, 기차, 버스 역사내 업소(단, 지하철역 및 시내버스 역사내 업소는 제외)

2. 시행일 : 이 고시는 1994. 2. 1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6호

제2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

전기공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전기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하였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4. 2. 1

서울특별시 장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역	관련법규
0359	세계건설전기(주)	윤광희	성동구 왕십리2동 966-14	기술자 1년 부족	영업정지4월(93.12.31~94.4.30)	전기공사법 제29조제2항
0382	이석전력	곽재용	성동구 송정동 79-2	"	영업정지3월(93.12.31~94.3.30)	"
0883	보은전기공사	김봉운	성동구 자양동 551-41	"	영업정지4월(93.12.31~94.4.30)	"

면허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역	관련법규
1180	한성전공사	성용경	성동구 마장동 766-19	기술자 1인 부족	영업정지6월(93. 12.31~94.6.30)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제2항
1112	동방전기 통신공사	이동재	동대문구 신설동 93-55	국세채납	영업정지2월(94. 1.24~3.23)	전기공사업 면허관리지침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7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

였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면허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비고
254	한국전설	황홍연	성동구 구의동 252-16	면허취소	면허기준미달	94. 1. 26	소재지 불명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8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실효처분하

였기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번호	업체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시	소재지	비고
1651	명지전력	김종수	면허실효	94. 1. 26	강동구 길동 391-6	자진 반납
0014	금성전기 통신공사	최근호	면허실효	94. 1. 26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0	자진 반납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9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994. 2. 1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안전명	주관부서
의견청취 (1건)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유통, 업무설비) 결 정 및 변경 결정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시설계획과